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통로암거 설치기준) 일부개정 알림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6929(2022.12.22.)호와 관련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로암거 설치기준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가 통보됨에 따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설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산지방관리청에서는 향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권익위 공문 1식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신구대조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로타

시설사무관

최영록

도로건설과장

전결 2023. 12. 15.
오수영

협조자

시행 도로건설과-5083

(2023. 12. 15.)

접수 도로계획과-10476

(2023. 12. 1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93

팩스번호 044-201-5588

/ kimrota13@molit.go.kr

/ 비공개(5)